

의무위원회 규정

사단
법인

대한철인3총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철인3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의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선수가 정신적 및 신체적인 면에서, 건강한 상태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IOC”라 한다),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이하“ANOC”라 한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이하 “OCA”라 한다.), 국제경기협회(이하“IFs” 라 한다), 세계반도핑 기구(이하“WADA”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KADA”라 한다)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스포츠의 학 발전 및 반도핑 활동에 기여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회의 자문에 응한다.

1. IOC, ANOC, OCA 등의 의무위원회 및 국제스포츠기구 의무기관과의 업무협조
2. WADA 및 KADA와의 반도핑 업무 협조
3. 국제종합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 파견선수에 대한 도핑 예방교육 실시
4. 스포츠의학 분야의 현장지원에 관한 업무
5. 스포츠의학 강습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지원
6. 스포츠의학 연구논문의 출판
7.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4조(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원 10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단, 주요 국제협회의 의무위원회 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당연직 위원이 해당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선수 성별 검사 요구 절차) ① 선수의 성별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성별 검사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의 성별검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1. 선수의 성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
 - 가. 선수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 나. 소속단체의 의무책임자
 - 다.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
2. 성별검사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협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회 회장은 서면 자료 및 타당한 근거를 갖추어 위원회에 검사 승인을 요청한다.
 - 가. 성별 의심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 경기력에 대한 자료 등 구체적인 사유. 단 성희롱 소지가 있는 자료 제외
 - 나. 요청자의 이름, 직책, 주소, 연락처 및 서명
 - 다. 대상 선수의 성별 검사 동의서

② 위원회는 소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별 검사 요청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 절차에 따르지 않은 요청은 다루지 아니하며, 의학적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성별 검사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규 및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의 조사 및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협회의 규정이 있을 시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올림픽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